문서번호	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-6924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18.06.26.
공개여부	공개

★차장	팀장	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	문화체육본부장	
협 조	돔경기장운영처장			

『서울시설공단 - 국민체육진흥공단』“체육시설 안전을 위한”

공동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 계획(안)

2018. 6.

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

『서울시설공단 - 국민체육진흥공단』“체육시설 안전을 위한”

공동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 계획(안)

서울시설공단 산하 전문체육시설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상호 보유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·협력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

1 업무협약 개요

❑ 협약기관 : 국민체육진흥공단(KSPO,케이스포)

- ▸ 법 인 명 :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- ▸ 설 립 일 : 1989.04.20. (근거법령 :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)
- ▸ 설립목적 : 국민체육의 진흥, 스포츠경기 수준향상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 올림픽 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 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· 운용 관리
- ▸ 체육시설 안전 관련 사업 (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탁, 2015.8월)
  - 관련법령 :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·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6
  - 수행내용 : 1.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
    2.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

❑ 업무협약 주요내용

○ **협약기간 : 2년** * 만료 1개월전까지 상호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 종료

○ **주요협력사업**

-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협력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
-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교류
- 양 기관 시설물 안전관리·점검 지원 및 수행 등

○ **협약체결** : 우리 공단 이사장 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(조재기)

2 협약 체결행사 계획

□ **일 시** : 2018. 6. 28(목), 15:00

□ **장 소** : 국민체육진흥공단 14층 회의실

□ **참석대상**

○ 우리 공단(총4명) : 이사장, 문화체육본부장,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돔경기장운영처장

○ 국민체육진흥공단(총3명) : 이사장 조재기, 스포츠레저사업본부장 황용필 미래사업실장 용재명

□ **진행순서**

시 간	내 용	비 고
14:50~15:00 (10′)	국민체육진흥공단 도착 및 환담	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회관 14층
15:00~15:05 (05′)	개회, 참석인사 소개	사회 : 체육시설 안전팀장 곽봉현
15:05~15:15 (10′)	양기관 이사장 인사말씀	
15:15~15:18 (3′)	협약 주요내용 설명	
15:18~15:25 (7′)	업무협약서(MOU) 서명 및 기념촬영	기관장 / 참석자 전원
15:25~15:30 (5′)	폐회	

3 행정사항

○ 기념촬영 및 보도자료 배포, 공단SNS 등 홍보 (홍보마케팅실 협조)

○ 현수막 제작 및 다과 등 업무협약 체결식 준비 (국민체육진흥공단)

○ 업무협약서(안) 검토(기획조정실 법무팀) 결과 반영 완료

첨 부 : 업무협약서 1부. 끝.

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

서울시설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(이하 "양 기관" 이라 한다)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,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가.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협력
나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
다.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협력 및 기술지원
라. 양 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· 점검 지원 및 수행
마. 체육시설 정보종합관리시스템(SFMS) 구축·관리에 관한 협력
바.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교류
사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제 · 해지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여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.
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2. 일방 당사자가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. 이는 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7조(법적구속력 배제)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제6조를 제외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 그럼에도 양 기관은 협약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6월 28일

서울시설공단	KSPO 국민체육진흥공단
이사장 이 지 윤	이사장 조 재 기

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

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설공단(이하 "양 기관" 이라 한다)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,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가.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협력
나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
다.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협력 및 기술지원
라. 양 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· 점검 지원 및 수행
마. 체육시설 정보종합관리시스템(SFMS) 구축·관리에 관한 협력
바.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교류
사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

제3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제 · 해지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여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.

1.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
2. 일방 당사자가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3.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. 이는 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

제7조(법적구속력 배제)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제6조를 제외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 그럼에도 양 기관은 협약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6월 28일

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| 서울시설공단

이사장 조 재 기 | 이사장 이 지 윤